

# 2012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

의 안 번 호	106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 심의,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**가.** 201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46,91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,06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,104백만원이 증액된 214,826백만원 특별회계는 25,173백만원이 감액되어 32,090백만원임.

## 나. 세입예산은

일반회계가 지방세 21,075백만원, 세외수입 10,210백만원, 지방교부세 116,450백만원, 재정보전금 5,000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62,091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,849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14,241백만원임.

## 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 정책사업비 163,873백만원(예비비 2,519백만원 포함), 행정운영경비 37,560백만원, 재무활동 13,393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29,234백만원, 행정운영경비 2,620백만원, 재무활동 236백만원임.

## 관계법령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27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.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.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 시.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재정법 제36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·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40조

- ① 예산은 예산총칙, 세입·세출예산, 계속비,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.
- ② 예산총칭에는 세입·세출예산, 계속비,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